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42

발의연월일: 2024. 6. 10.

발 의 자:민형배·이정문·김영배

김용민 • 이수진 • 문정복

이연희 · 신영대 · 김영환

이용선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에 관한 지급정지 규정과 동일한 기준을 유사수신행위에 이용된 계좌에도 적용하고자 합니다. 불법 리딩방 사기 피해 사전 예방과 신속 구제를 위한 것입니다.

주식리딩방, 사설 FX(Foreign Exchange)마진거래 투자 등에서 금융취약계층을 노린 사기사건이 많습니다. 이러한 신종 불법금융 사기범죄는 정보통신기술 발전에 따라 지능적으로 변합니다. 그 피해 규모및 피해자 범위도 확대됩니다.

현행법에 주식리딩방 등 유사수신행위로 인한 범죄수익에 대한 지급정지 규정이 없습니다. 수사기관에서 해당 금융사기범죄 수사를 진행하더라도 범죄수익에 대한 지급정지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범죄자들이 남아 있는 범죄수익을 빼돌리면 사실상 피해자에 대한 사후구제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에 금융회사가 자사의 거래계좌 중 유사수신 거래로 추정할만한 사유가 있는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금융회사가 이를 위반하여 해당 계좌로 금융거래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조속한 피해자 구제 를 도모하고자 합니다(안 제3조의2, 제3조의3 및 제8조제2항 신설).

법률 제 호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및 제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지급정지) ① 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거래내역 등 확인을 통하여 제3조를 위반한 유사수신행위에 이용되는 계좌(이하 "이용계좌"라 한다)로 추정할 만한 사정이었다고 인정되면 즉시 해당 이용계좌의 전부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 피해자의 피해구제 신청이나 지급정지 요청이 있는 경우
- 2. 수사기관 또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이용계좌라는 정보제공이 있는 경우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② 금융회사는 제1항에 따라 지급정지 조치를 한 경우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해당 지급정지 조치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여 야 한다.
- 1. 피해구제 신청이나 지급정지 요청을 한 피해자
- 2. 정보를 제공한 수사기관 및 금융감독원
- 3. 지급정지된 이용계좌의 명의인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피해구제 신청, 지급정지 요청의 방법ㆍ절차, 지급정지조치의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조의3(지급정지에 대한 이의제기) ① 이용계좌의 명의인은 제3조의 2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가 이루어진 날부터 2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해당 계좌가 유사수신행위에 이용되지 아니한 사실을 소명하고 금융회사에 지급정지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② 금융회사는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이를 접수하고 즉시 피해구제 신청 및 지급정지 요청을 한 피해자, 수사기관 및 금 융감독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제기의 방법・절차・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중 "제1항에"를 "제1항 및 제2항에"로 한다.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금융회사
 - 2. 제5조를 위반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기 위하여 금융업 유사상호 를 사용한 자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해당 지급정지 조치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지 아니한 금융회사
- 2. 제3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명의인의 이의제기를 피해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금융회사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전 설> 제3조의2(지급정지) ① 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거래내역 등 확인을 통하여 제3조를 위반한유사수신행위에 이용되는 계좌(이하 "이용계좌"라 한다)로 추정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즉시 해당 이용계좌의 전부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하여야한다. 1. 피해자의 피해구제 신청이나지급정지 요청이 있는 경우 2. 수사기관 또는 「금융위원회의 실치 등에 관한 법률」에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이용계좌라는 정보제공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금융회사는 제1항에 따라지급정지 조치를 한 경우 지체에 가는 지급정지 조치를 한 경우 지체에 가는 기급정지 조치를 한 경우 지체에 가는 기급 한 경우 지체에 가는 기급 한 경우 지체에 가는 기급한	현 행	개 정 안
없이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해 당 지급정지 조치에 관한 사항		제3조의2(지급정지) ① 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거래내역 등 확인을 통하여 제3조를 위반한유사수신행위에 이용되는 계좌(이하 "이용계좌"라 한다)로 추정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즉시 해당 이용계좌의 전부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하여야한다. 1. 피해자의 피해구제 신청이나지급정지 요청이 있는 경우 2. 수사기관 또는 「금융위원회의 의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따라설립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이용계좌라는 정보제공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금융회사는 제1항에 따라지급정지 조치를 한 경우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자에게 해

<신 설>

- 을 통지하여야 한다.
- 1. 피해구제 신청이나 지급정지 요청을 한 피해자
- 2. 정보를 제공한 수사기관 및 금융감독원
- 3. 지급정지된 이용계좌의 명의 인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피해구제 신청, 지급정지 요청의 방법·절차, 지급정지 조치의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당당으로 정한다.
- 제3조의3(지급정지에 대한 이의 제기) ① 이용계좌의 명의인은 해당 계좌가 유사수신행위에 이용되지 아니한 사실을 소명하는 경우에는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가 이루어진 날부터 2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금융회사에 지급정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② 금융회사는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이를 접 수하고 즉시 피해구제 신청 및 지급정지 요청을 한 피해자, 수 사기관 및 금융감독원에 통지

제8조(과태료) ① 제5조를 위반하 여 유사수신행위를 하기 위하 여 금융업 유사상호를 사용한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 료를 부과한다.

<신 설>

- 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 의제기의 방법·절차·통지 등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 제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취하지 아니 한 금융회사
 - 2. 제5조를 위반하여 유사수신 행위를 하기 위하여 금융업 유사상호를 사용한 자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해당
 지급정지
 조치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지
 아니한
 금융

 회사
 - 2. 제3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명의인의 이의제기를 피해자 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금융회 사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	③ 제1항 및 제2항에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u>.</u>